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3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·시행하는 계획, 점검·검사, 교육·훈련,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직무 대행의 순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우선한다.
- ④ 경찰청장, 소방청장, 문화재청장, 산림청장,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문 3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.
- ㄴ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ㄷ. 기능연속성계획에는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,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ㄹ.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는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포함)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40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·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하여야 한다.

문 4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·운용하여야 하고, 그 기준을 제정할 때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,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,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·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문 4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③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
문 4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재난현장에서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,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긴급구조업무와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문 4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복구비등의 선지급과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등을 선지급 하려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한 피해 주민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(主)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지급한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지 아니한다.
- ④ 반환하여야 할 복구비등의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.

문 4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안전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
 ㄴ. 안전관리현장의 제정·고시
 ㄷ. 안전정보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
 ㄹ. 안전지수의 개발·조사 및 그 결과 공표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
문 46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ㄴ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.
 ㄹ.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. 12. 31.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2020. 9. 25.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기한을 준수한 연장신청이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4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 1명과 50명 이상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② 회의는 회의를 요청한 위원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④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ㄴ.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ㄹ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
문 4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·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아닌 것은?

- 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의 일시 사용
- ②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
- ③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
- ④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의 위험구역 출입금지

문 5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·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신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,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·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